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이주용 의원)

의안 번호	259
----------	-----

발의연월일: 2020년 08월 28일

발 의 자: 이주용 의원

찬 성 자: 박찬원, 심현정 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바둑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등 군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바둑 교육 사업,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등 군수의 추진사업 규정(안 제4조)

라. 바둑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명시(안 제5조)

마.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바둑 진흥법」, 「바둑 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0. 08. 04. ~ 2020. 08. 24.(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0. 07. 22. ~ 2020. 07. 30., 아래표 참조

조례안	제출 의견(교육체육과)	의회 의견
	<p>조항신설(제5조 삽입) 제5조(바둑연수원의 조성)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바둑연수원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사유 : 현재 추진 중인 바둑 연수원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시 명문화 필요</p>	<p>【수용】</p>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창군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사업
2. 평창군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3.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바둑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둑연수원의 조성)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바둑연수원을 조

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 군수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률]

□ 바둑 진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바둑의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바둑의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5.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6. 바둑전문기사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바둑단체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둑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바둑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

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이 전통놀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바둑 진흥법 시행령

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바둑 실력 검증대회)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이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주최하는 대회(해당 비영리법인이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 제2항 제1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2.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바둑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창군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사업
2. 평창군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3.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바둑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둑연수원의 조성)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바둑연수원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주용 의원
연락처	(033) 330 -2503